

육청간 정원조정계획에 따라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감축된 서울시교육청의 총정원을 7,369명에서 91명이 감축된 7,278명으로 조정하고, 다만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토록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또는 정비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56
----------	-----

2000. 5.  
문교보사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00년 4월 17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19회 임시회 제3차 문교보사위원회 (2000년 4월 27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송영식 기획관리실장)
  - 가. 제안이유
    -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사무의 일부가 교육감에게 이양되어 그 권한의 일부를 연금취급기관장인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책임행정체제를 구현하며,
    -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수행하고 있는 무인가 교육시설의 단속 권한사무에 대한 위임사무의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소속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권한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함.(안 제5조제7호)
  - “사회교육시설과 학교부설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과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자구를 수정함.(안 제5조제11호)
  - 초·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가 초·중등교육시설의 단속 및 폐쇄명령 권한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함.(안 제5조제13호)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윤병국)
  -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연금법의 개정('99.1.29 개정, '99.7.30 시행)으로 교육감에 이양된 연금사무에 관한 권한 중 소속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권한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99.8.31 개정, 2000.3.1 시행)됨에 따른 관련조항의 자구수정과, 현재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수행하고 있는 무인가교육시설의 단속권한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57
----------	-----

2000. 5.  
문교보사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00년 4월 17일 회부